

직원 채용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(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.)
8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(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.)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제한 일로
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10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
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